

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일괄이양법」 및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 -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·육성을 위한 필요시책 수립·추진
- 제4조(설립인가 신청)
 -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- 제9조(보조금 지원 등)
 -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원 조건

5. 검토의견

- 2020년 2월 「지방이양일괄법」의 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, 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·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·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및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기준 마련, 보조금 지원,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등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조문에 “지방문화원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2조(정의)에서는 이 법에서 “지방문화원”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서는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“문화원” 또는 “文化院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(地名)을 표시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“충청북도 지방문화원”을 “충청북도 문화원”으로 하여 “지방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 타 시도의 경우를 참고하면 서울, 경기 등 대부분 광역 시도가 지방문화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“충청남도 문화원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. 끝.